

##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寺位田) 소유와 경영 양상\*

김 선 기\*\*

1. 머리말
2. 사위전의 분급 추이
3. 사위전의 소유 양상
4. 사위전의 경영 실태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현전하는 사위전(寺位田) 관련 문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 소유와 경영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후기 왕실 원당은 내수사 및 궁방을 통해 형성된 면세지 성격의 사위전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17세기 후반 이후 궁방전 규제가 강화되는 정책적 방향과 함께 원당사찰의 사위전 또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하지만 원당은 지속적으로 왕실 구성원을 축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였고 진상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 규모의 사위전 분급은 이어졌다.

왕실 원당의 사위전은 복합적인 소유 양상을 나타냈다. 크게 간접적인 점유 형태를 지닌 사위전과 직접적인 소유 구조를 갖는 사위전이 존재하였다. 원당사찰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점유한 위전은 '내수사·궁방-왕실 원당-토지 경작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나타냈고 직접적으로 소유한 위전은 '내수사·궁방-왕실 원당(=토지 소유자)'의 소유 형태를 나타냈다.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6020953).

\*\*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fly1187@naver.com)

원당사찰은 소유한 사위전의 작인으로부터 지대를 수취하여 사찰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다. 1832년 당시 용주사는 간접적으로 점유한 위전에서 도조를 수납하였고 직접적으로 소유한 위전에서 도조와 세조를 수취하였다. 이때 위전에서 거둔 도조는 용동궁으로 상납하였고 세조는 사찰의 제반 운영비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용주사의 사례는 당대 왕실 원당이 지주의 위치에서 위전을 경영하였다는 양상을 보여준다. 결국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은 간접·직접 소유가 병존하는 중층적 소유 구조와 지주적 운영 체계 속에서 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왕실 원당, 사위전, 토지 소유, 토지 경영, 지주

## 1. 머리말

토지는 전근대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조선후기 사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사찰 소유의 토지는 그곳의 운영 동력을 마련하는 데에 주요한 토대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당대 사찰은 매득(買得)과 시납(施納)의 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이 제시되었고, 균역법 시행 이후 승도(僧徒)의 감소로 사찰 소유의 토지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현상이 밝혀졌다.<sup>1)</sup> 또한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왕실 원당에 분급되었던 면세지(免稅地)의 존재 양상도 검토되었다.<sup>2)</sup> 이를 통해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에 관한 전반적인 양상이 드러났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寺位田) 소유와 경영 양상

1) 김갑주, 『조선후기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7, 201~282쪽; 김석희, 「朝鮮後期 南海縣《花芳寺量案》分析」 『한국문화연구』 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8; 김선기,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와 변동 - 해남 대둔사(大菴寺)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200, 한국사연구회, 2023a.

2) 박성준, 「18세기 후반~20세기 초 寺位免稅地의 존재양상과 변화」 『역사교육』 130, 역사교육연구회, 2014.

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sup>3)</sup> 위전(位田)이란 지급 대상 기관의 운영을 위해 분급된 토지로 일종의 면세지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sup>4)</sup> 따라서 사위전은 국가가 사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분급하였던 면세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사위전은 왕실 원당을 중심으로 분급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실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가평군현등사위전답개타량성책(加平郡懸燈寺位田畚改打量成冊)』(1882) 등 왕실 원당의 사위전과 관련된 양안(量案)이 소장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또한 동일한 소장처의 『용주사위답반호사음작인등이정책(龍珠寺位畚班戶畝音作人等厘正冊)』(1832)에는 용주사 위전의 구체적인 경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sup>7)</sup> 당시 용주사 위전의 작인(作人) 및 지대(地代) 정보가 기재되어 사위전의 경영 양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상의 자료들을 활용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당 자료들을 활용하여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 소유와 경영 양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록』 및 『승정원일기』 등의 연대기 사료와 함께 사위전 관련 문서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 소유와 경영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당대 사위전의 분급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사위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그 소유 구조를 추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원 용주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위전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당대 왕실 원당의 수입 구조의 일환을 규명하

3) 조선시대 왕실 원당의 목록은 탁효정, 「조선시대 王室廟堂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2, 182~224쪽 참조. 한편 원당이라는 용어는 왕실의 원당사찰뿐만 아니라 군문(軍門)과 아문(衙門) 등 각처에 소속된 사찰에도 사용되었다(『承政院日記』 370책, 숙종 23년 3월 13일 갑자). 다만 본 글에서는 왕실 원당사찰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편의상 이를 별도의 구분 없이 '원당' 혹은 '원당사찰'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4) 조선시대 사찰의 위전 분급은 수륙사(水陸寺)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11월 16일 기유.

5) 사찰의 위전은 이러한 사위전 외에도 제위전(祭位田)으로 표기되는 토지가 존재하는데 해당 토지는 사위전과 다르게 개인이 망자(亡者)의 내세(來世)를 축원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파악된다.

6) 『加平郡懸燈寺位田畚改打量成冊』(奎18601).

7) 『龍珠寺位畚班戶畝音作人等厘正冊』(奎18990).

는 작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2. 사위전의 분급 추이

조선후기 원당사찰은 내수사 및 궁방을 통해 형성된 사위전을 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대 왕실 원당의 사위전 분급 추이는 궁방전(宮房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8)</sup> 이는 당대 원당사찰의 사위전 분급 추이를 궁방전과 관련된 정책적 흐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17세기 이후 궁방전의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조정의 논의에 의하면 1623년(인조 1) 전체 수백 결 정도의 규모였던 제궁(諸宮)의 면세지가 1662년(현종 3)에는 한 궁방의 면세지만 하더라도 약 1,400결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전반적인 궁방전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궁방전의 확대는 국가재정 운영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궁방전에는 면세의 규례가 존재하였으므로 그것의 확대는 곧 국가 수세지(收稅地)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sup>10)</sup>

한편 17세기 이후 원당사찰은 내수사 및 궁방에 의해 관리·운영되었다.<sup>11)</sup> 또한 왕실 원당의 사위전 역시 면세의 관행이 적용되었으며 궁방전과 마찬가지로 수세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실제 1626년(인조 4) 3월 사간 윤형언(尹衡彦)과 지평 김욱(金楛)은 여러 산의 사원(寺院)들이 궁가(宮家)의 원당을 청탁하여 위전을 많이 점유하고 모두 그 전세를 면제 받으니 하루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sup>12)</sup> 이처럼 사위전은 궁방전과 같은 논

8) 1566년(명종 21) 선(禪)·교(敎) 양종(兩宗)이 혁파된 후 내원당(內願堂)의 토지를 내수사로 귀속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궁방전 형성의 단초적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왕실 원당의 사위전과 궁방전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송수환, 『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 집문당, 2002, 145쪽.

9) 『仁祖實錄』 권3, 인조 1년 11월 11일 정묘; 『顯宗實錄』 권5, 현종 3년 7월 13일 갑신.

10) 박준성,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 『한국사론』 1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4, 200~201쪽.

11) 김선기, 「조선후기 僧役의 제도화와 운영 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b, 88~89쪽.

12) 『承政院日記』 12책, 인조 4년 3월 16일 기미.

의 선상에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그러자 17세기 후반부터 조정에서는 궁방전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662년 궁방전 면세결의 규모를 제한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현종은 궁방의 면세결을 600결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결수(結數)가 과다하다는 관료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논의 끝에 결국 1663년(현종 4) 대군(大君)과 공주(公主)는 400결, 왕자(王子)와 옹주(翁主)는 250결로 그 규모가 제한되는 규정이 시행되었다.<sup>13)</sup> 이러한 궁방의 면세결 제한 조치는 궁방전 규제의 시작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때 규제 대상에는 원당사찰도 포함되었다. 궁방전 면세결 제한 조치와 함께 일부 왕실 원당의 혁파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실제 1660년(현종 1) 이조에서 궁방의 원당을 혁파할 것을 건의하자 현종이 이를 윤허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현종은 이조의 의견에 반대하였으나,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를 비롯한 대신들의 요청이 지속되었고 결국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었다. 다만 현종은 조정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명례궁(明禮宮)의 원당을 제외할 것이라는 단서를 남겼다. 실질적으로 동평위(東平尉)·흥평위(興平尉)의 원당 등 문제로 거론되었던 사찰만을 혁파한 것이었다.<sup>14)</sup> 이러한 조치는 당시 혁파된 일부 원당사찰의 사위전이 환수되는 방향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실제 1665년(현종 6)에 찬술된 황해도 배천(白川) 강서사(江西寺)의 사적비에는 1663년 여러 사찰의 위전이 모두 본사(本司)로 환수되었는데, 본 사찰은 여러 대의 국왕에게 어석(御席)을 진헌(進獻)한 공으로 특별히 광해군 이래로 분급된 전민(田民)이 환수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sup>16)</sup> 해당 기록

13) 박준성, 앞의 논문, 204~205쪽.

14) 김선기, 앞의 논문, 2023b, 90~92쪽.

15) '원당사찰의 혁파'라는 것은 국가가 해당 사찰의 운영을 정지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실 원당에서 지정 해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찰 혁파와 관련된 용어의 구체적인 용례는 손성필, 『寺刹의 혁파, 철퇴, 망폐 - 조선 태종·세종대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오해 -』, 『진단학보』 132, 진단학회, 2019 참조.

16)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저, 이윤석·다지마 데쓰오(田島哲夫) 역,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쓴 조선시대 불교통사』, 민속원, 2020, 485쪽.

은 궁방전 결수 제한 조치가 시행된 1663년에 일부 헐파된 원당사찰의 소유 위전이 내수사로 환수되었다는 내용과 강서사의 경우에는 헐파 대상 원당이 아니었으므로 광해군대 이후 분급된 위전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보여 준다. 따라서 궁방전 규제가 시작되면서 일부 왕실 원당의 헐파 및 헐파 원당의 사위전 회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궁방전의 결수 제한 조치는 실효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688년(숙종 14) 4월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은 명선공주방(明善公主房)과 명혜공주방(明惠公主房)의 궁방전이 많게는 1,000여 곁에 이른다며 그 과도함을 언급한 것이었다.<sup>17)</sup> 이에 숙종은 궁방전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고, 1695년(숙종 21) 궁방전의 절수(折受)를 금지하고 급가매득제(給價買得制)와 민결면세제(民結免稅制)를 도입하는 을해정식(乙亥定式)을 시행하게 되었다. 절수 금지와 급가매득제의 시행은 1688년부터 논의되었던 규정을 확립한 것으로 궁방에서 매득한 토지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규정한 조치였다. 또한 민결면세제는 국가 수세분의 일부를 궁방으로 분급하는 방식을 설정한 조치였다.<sup>18)</sup> 이를 통해 숙종은 절수에 기인한 국가재정의 감축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을해정식은 궁방전 규제를 위한 본격적인 개혁 조치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궁방의 토지 절수가 금지되면서 원당 또한 절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688년 남구만이 궁방의 토지 절수뿐만 아니라 원당 등의 절수도 그 폐단이 심하다고 아뢰자 숙종이 이를 모두 금지한 것이었다.<sup>19)</sup> 이후 1717년(숙종 43)에도 전라감사 김보택(金普澤)이 도내 여러 궁가의 원당이나 각 아문에 절수된 사찰을 모두 헐파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역시 윤휈을 받았다.<sup>20)</sup>

영조대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1750년(영조 26) 1월 호남어사 김치인(金致仁)이 원당의 폐단을 보고하자 각도 원당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7월 보고된 원당 중에 능묘(陵墓)에 소속된 일부 사찰을 제외한 나머지 원

17) 『備邊司謄錄』 42책, 숙종 14년 4월 26일.

18) 박준성, 앞의 논문, 210~213쪽.

19) 『備邊司謄錄』 42책, 숙종 14년 4월 26일.

20) 『肅宗實錄』 권60, 숙종 43년 8월 1일 임오.

당을 폐지한 것이었다.<sup>21)</sup> 나아가 1768년(영조 44)에는 영조가 신구(新舊)를 논하지 말고 원당을 혁파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sup>22)</sup> 다만 어필(御筆)이 전해지는 일부 원당은 혁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23)</sup> 이처럼 원당의 절수가 금지되면서 숙종대와 영조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당의 규모가 감축되었다. 이러한 원당의 감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혁파된 왕실 원당에 분급되었던 사위전의 회수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잔존 원당사찰에 분급되었던 사위전의 규모 또한 축소되었다. 1750년에 작성된 『여주목복재수증사위내수사환속전답개타량성책(驪州牧伏在水鍾寺位內需司還屬田畝改打量成冊)』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본 자료는 표제(標題)에서 드러나듯이 광주 수증사에 분급되었던 여주목 소재의 토지가 내수사로 환속되면서 다시 타량하여 작성한 전답안이다. 따라서 해당 자료에 수록된 토지 결수만큼 수증사 위전의 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본 전답안에 수록된 토지의 규모는 13결 68부 5속이었다. 이를 통해 1750년 호남어사 김치인의 보고 이후 수증사의 위전이 최소 13결 이상 환수되었다는 점이 파악된다. 그런데 당시 수증사는 능묘에 소속된 원당사찰로 거론되어 혁파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었다.<sup>25)</sup> 이는 원당 규모의 감축으로 인한 사위전의 축소와 함께 잔존한 왕실 원당에 분급되었던 사위전도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궁방전의 규제는 정조대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었다. 1776년(정조 즉위) 규정 외 면세결의 속공과 무토(無土)에 파견되던 도장(導掌)의 혁파를 핵심으로 하는 병신정식(丙申定式)이 단행된 것이었다. 병신정식의 시행으로 규정 외 궁방전 약 3만여 결이 출세지(出稅地)로 전환되었고, 도장을 통한 민결면세지의 수취가 본읍(本邑)에서 수세하여 호조에 납부하면 호조에서 궁방으로 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sup>26)</sup> 이러한 조치는 궁방전을 축소시키고 호조

21) 『備邊司謄錄』 121책, 영조 26년 1월 2일; 『承政院日記』 1058책, 영조 26년 7월 23일 계해.

22) 『備邊司謄錄』 152책, 영조 44년 8월 17일.

23) 『備邊司謄錄』 152책, 영조 44년 8월 18일.

24) 『驪州牧伏在水鍾寺位內需司還屬田畝改打量成冊』(奎18419).

25) 『承政院日記』 1058책, 영조 26년 7월 23일 계해.

26) 박준성, 앞의 논문, 257~258쪽.

의 영향력을 증대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이 반영된 것이었다.<sup>27)</sup>

병신정식의 시행과 동시에 정조는 원당의 혁파를 명하였다. 병신정식이 시행된 해인 1776년 대사간 홍익(洪億)이 원당의 폐단을 보고하자 그것의 혁파를 명한 것이었다.<sup>28)</sup> 다만 이때에도 어필이나 수교(受敎)를 봉안한 사찰은 혁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29)</sup> 혁파된 원당의 사위전은 내수사 혹은 각 궁방으로 회수되었다. 이듬해인 1777년(정조 1) 정조가 원당을 혁파할 경우 분급 하였던 궁결(宮結)을 각 궁에 환속해야 하는지 묻자 홍국영(洪國榮)이 각 궁의 물자이니 마땅히 환속해야 한다고 답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sup>30)</sup> 따라서 병신정식의 시행과 함께 원당 혁파가 이루어지면서 사위전의 규모는 재차 감축되었다.

18세기 후반 잔존한 왕실 원당과 사위전의 규모는 1787년에 작성된 『내수사급각궁방전담총결여노비총구도안(內需司及各宮房田畵總結與奴婢總口都案)』(이하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도안』에 수록된 원당사찰의 수는 총 35개소였다. 소속별로 구분하면 내수사 25사, 명례궁 4사, 수진궁 4사, 용동궁 1사, 육상궁 2사, 선희궁 2사로 확인된다.<sup>32)</sup> 당시 다수의 원당사찰이 내수사 소속이었다는 점이 파악된다. 이어서 면세지의 규모는 총 555결 99부 4속이었다. 구체적으로 사위면세질(寺位免稅秩) 446결 5속, 유토면세질(有土免稅秩) 79결 24부 5속, 무토면세질(無土免稅秩) 29결 86부 1속, 출세질(出稅秩) 88부 3속으로 확인된다. 이때 사위면세질로 분류된 토지는 유토면세지였다.<sup>33)</sup> 따라서 전체 면세결 중 유토의 비율이 약 94.5%로 왕실 원당의 사위전은 대부분 유토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와 같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왕실 원당의 사위전 감축 결과 약 556결 정도만 존속하게 되었다

27)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태학사, 2015, 137~139쪽.

28) 『正祖實錄』 권1, 정조 즉위년 6월 14일 계축.

29) 『日省錄』 271책, 정조 12년 7월 8일 무진.

30) 『承政院日記』 1399책, 정조 1년 5월 13일 정축.

31) 『內需司及各宮房田畵總結與奴婢總口都案』(奎9823).

32) 『도안』에 수록된 사찰 목록은 박성준, 앞의 논문, 123~124쪽 (표 1) 참조.

33) 박성준, 위의 논문, 134~138쪽.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15세기 후반 사찰 면세지의 규모가 8,300여 결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은 양의 사찰 면세지가 속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하지만 18세기 말 약 556결의 사위전이 존속한 것처럼 그것의 분급이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원당사찰은 당대에도 지속적으로 왕실 구성원의 축원을 위한 의례를 주관하였고 진상(進上)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위전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1790년(정조 14) 여주 보은사(報恩寺) 승인(僧人)의 격쟁상언(擊錚上言)을 살펴보면 분급된 위전을 토대로 영릉(英陵)의 지공(支供)과 춘추(春秋)의 진상(進上)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또한 건봉사의 경우 조곽(早藪)·백혜(白鞋)·석이(石耳)·생리(生梨) 등의 진상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된 사위전에서 조달하였다.<sup>36)</sup> 즉, 왕실 원당의 기능이 지속됨에 따라 사위전의 분급 역시 이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원당사찰이 소유하였던 사위전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궁방전의 규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sup>37)</sup> 이러한 사위전의 감축은 국가재정의 확충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의 결과였다. 왕실 원당의 사위전 감소는 원당 헐파로 인한 면세결의 회수와 잔존 원당의 면세결 축소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잔존 원당사찰도 사위전 감소 경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 전국 각지의 약 556결 가량의 사위전이 운영되고 있었다. 왕실 구성원의 축원을 위한 의례를 주관하고 진상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원당사찰을 지원하기 위해 사위전이 분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대에도 사위전은 왕실 원당의 운영 기반으로 활용된 것이었다.

34) 『成宗實錄』 권9, 성종 2년 1월 27일 경자.

35) 『備邊司謄錄』 176책, 정조 14년 2월 13일.

36) 김신기, 「조선후기 간성(杆城) 건봉사(乾鳳寺)의 위상과 존립 양상」 『사학연구』 156, 한국사학회, 2024, 255~256쪽.

37) 이후 19세기 후반 원당사찰의 사위전 규모가 약 416결 정도였다는 선행 연구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원당사찰의 면세지 축소 경향은 19세기에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박성준, 앞의 논문, 142~146쪽.

### 3. 사위전의 소유 양상

전술한 것처럼 조선후기 왕실 원당은 면세지 성격의 사위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위전의 소유 양상은 현존하는 여러 사위전 관련 양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토 대상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가평군현등사위전답개타량성책(加平郡懸燈寺位田畓改打量成冊)』  
(1882)<sup>38)</sup>
- ② 『경기도여주보은사위전답양안(京畿道驪州報恩寺位田畓量案)』  
(1720)<sup>39)</sup>
- ③ 『양근군소재수종사위전답타량성책(楊根郡所在水鍾寺位田畓打量成冊)』(1750)<sup>40)</sup>
- ④ 『여주목수진궁속고달사위전답타량성책(驪州牧壽進宮屬高達寺位田畓打量成冊)』(1741)<sup>41)</sup>
- ⑤ 『지평현소재용문사위전답개타량책(砥平縣所在龍門寺位田畓改打量冊)』(1840)<sup>42)</sup>

상기 5건의 자료는 각각 18~19세기 가평 현등사, 여주 보은사, 광주 수종사, 여주 고달사, 지평 용문사의 사위전을 기재한 양안이다. 각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882년(고종 19)에 작성된 『가평군현등사위전답개타량성책』은 당시 현등사가 소유하였던 사위전을 타량하여 작성한 양안이다. 본 양안에는 가평군에 소재한 현등사 위전 총 86필지의 정보가 수록되었다. 각 필지마다 자호(字號), 지번(地番), 전품(田品), 지목(地目), 장광척수(長廣尺數), 부속수(負束數), 사표(四標), 작명(作名)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가평군 소재 현등사의 위전은 총 18결 9속으로 전 10결 30부 9속, 답 1결 39부 8속, 진전(陳田) 6결 30부 2속으로 구분된다. 또한 진전

38) 『加平郡懸燈寺位田畓改打量成冊』(奎18601).

39) 『京畿道驪州報恩寺位田畓量案』(奎18989).

40) 『楊根郡所在水鍾寺位田畓打量成冊』(奎18421).

41) 『驪州牧壽進宮屬高達寺位田畓打量成冊』(奎18345).

42) 『砥平縣所在龍門寺位田畓改打量冊』(奎18578).

을 제외한 65필지에는 김순석(金順石) 등 다수의 작명이 기재되었다.

1720년(숙종 46)에 작성된 『경기도여주보은사위전답양안』은 경상도 예천군(醴泉郡) 소재의 여주 보은사 위전을 수록한 양안이다. 본 양안에는 총 88필지의 자호, 지번, 지목, 부속수, 주명(主名) 등의 정보가 기재되었다.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예천군 현동면(縣東面) 삼분리(三墳里)와 신산리(申山里)에 위치하였던 보은사의 위전은 총 9결 69부 1속으로 전 1결 78부, 답 7결 91부 1속으로 구분된다. 또한 각 필지에는 서능룡(徐能龍) 등 다수의 주명이 기재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당대 왕실 원당의 사위전이 사찰이 위치한 지역과 멀리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1750년에 작성된 『양근군소재수종사위전답타량성책』은 광주 수종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양근군 소재의 사위전을 타량하여 작성한 양안이다. 해당 양안의 표제에는 ‘수종사사위환속내수사전답(水鍾寺寺位還屬內需司田番)’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앞서 제시한 『여주목복재수종사위내수사환속전답개타량성책』 수록 토지와 마찬가지로 당시 내수사로 환수되었던 수종사의 위전으로 파악된다. 본 양안에는 경기도 양근군 서중면(西中面)과 남중면(南中面)에 위치한 총 4필지의 정보가 수록되었다. 각 필지마다 자호, 지번, 전품, 지목, 장광척수, 부속수, 사표, 기주(起主), 시작(時作) 등의 사항이 기재되었다. 기입된 내용을 살펴보면 양근군 소재 수종사의 위전은 총 49부 7속으로 전 3필지 47부 2속, 답 1필지 2부 5속으로 확인된다. 또한 각 필지마다 기주와 시작 정보가 수록되었는데, 기주는 전부 수종사위(水鍾寺位)로 기재되었고 시작은 각 필지별로 이선봉(李先奉), 최봉이(崔奉伊), 자근남(者斤男), 최태만(崔太晩)이라는 이름이 기입되었다.

1741년(영조 17)에 작성된 『여주목수진궁속고달사위전답타량성책』은 여주목 소재의 고달사 위전을 타량하여 성책한 양안이다. 표제에 의해 고달사가 수진궁의 소속으로 사위전을 분급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양안에는 총 48필지의 자호, 지번, 전품, 지목, 장광척수, 부속수, 사표, 기주 등의 정보가 기재되었다. 당시 여주목 소재 고달사의 위전은 92부 7속으로 전 90부 5속, 답 2부 2속으로 확인된다. 또한 각 필지마다 산이(山伊) 등 다수의 기주가 기입되었다.

마지막으로 1840년(헌종 6)에 작성된 『지평현소재용문사위전답개타량책』은 지평 용문사의 위전을 타량하여 작성한 양안이다. 본 양안에 수록된 필지는 지평현 소재 154필지, 여주목 소재 20필지의 총 174필지로 각 필지마다 자호, 지번, 전품, 지목, 장광척수, 부속수, 사표 등이 기재되었다. 앞선 자료들과 달리 필지마다 주명 또는 작명 등의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당시 지평 용문사의 위전은 전체 26결 6부 2속으로 용문사 좌지(坐地) 1결 82부 8속, 기전(起田) 12결 11부 5속, 진전(陳田) 3결 90부 2속, 기답(起畓) 8결 18부 3속, 진답(陳畓) 3부 4속으로 파악된다.

이상 5건의 자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각 양안의 필지마다 작명, 주명, 기주, 시작 등의 인명이 기재되었거나 그것이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왕실 원당의 사위전 소유가 단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궁방전 또한 토지의 성격에 따라 '내수사·궁방-경작자'로 직접 소유하는 형태와 '내수사·궁방-지주-경작자'로 이어지는 형태의 소유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sup>43)</sup> 이때 사위전의 분급 주체가 내수사 또는 궁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당 사찰의 사위전 역시 중층적인 소유 구조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상기 자료에서 사위전의 필지마다 별도의 인명을 추가로 기입하였다는 것은 원당사찰에서 내수사 혹은 궁방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토지 경작자를 관리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내수사·궁방-왕실 원당-토지 경작자'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점유 형태를 갖는 사위전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필지마다 별도의 인명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당사찰에서 직접적으로 소유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필지의 세부적인 소유 실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은 '내수사·궁방-왕실 원당(=토지 소유자)'으로 직접 관계되는 소유 형태의 사위전도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왕실 원당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당 필지의 경작자를 직접 설정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43) 박준성, 앞의 논문, 239쪽.

실제 1832년(순조 32)에 작성된 『용주사위답반호사음작인등이정책』에는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sup>44)</sup> 해당 자료에는 경기도 진위 및 수원 소재의 용주사 위전 총 465필지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 각 필지마다 자호, 지번, 지목, 두락수(斗落數), 도조(賭租), 세조(稅租), 작명 등의 정보가 기재되었다. 이때 자료의 표제가 '이정책'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양안과 다른 성격의 자료임을 알려주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정책이라는 표현을 토대로 자료의 성격을 유추한다면 본 문서는 용주사 위전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작성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서 수록 필지마다 도조 및 세조 항목이 구별되어 기재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용주사위답반호사음작인등이정책』에 수록된 사위전이 도조와 세조의 수량이 모두 기입된 유형과 도조 수량만 기입된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때 도조만 기재된 필지는 용주사가 간접적으로 점유한 위전, 도조와 세조가 모두 기재된 필지는 용주사가 직접적으로 소유한 위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1799년(정조 23) 이후 용주사 위전을 용동궁에서 관리하면서 해당 토지로부터 도조를 수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5)</sup> 즉, 용주사에서 도조뿐만 아니라 세조까지 수취할 권한을 지녔던 위전이었던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 사위전의 소유 양상은 직접적인 형태와 간접적인 형태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sup>46)</sup>

이처럼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은 직접적인 형태와 간접적인 형태로 소유 구조가 구분되었다. 『가평군현등사위전답개타량성책』, 『경기도여주보은사위전답양안』, 『양근군소재수종사위전답타량성책』, 『여주목수진궁속고달사위전답타량성책』의 양안 기재 방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필지마다 작명, 주명, 기주, 시작 등의 인명이 기재되었다는 것은 '내수사·궁방-왕실 원

44) 『龍珠寺位畱班戶舍音作人等厘正冊』(奎18990).

45) 이은진, 「조선후기 龍洞宮의 恩悼世子 願堂 관리 - 수원 龍珠寺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57, 한국고문서학회, 2020, 285~288쪽.

46) 이를 궁방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왕실 원당이 직접적으로 소유한 위전은 민결면세지, 간접적으로 점유한 위전은 절수지 또는 매득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당-토지 경작자'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점유 형태를 갖는 사위전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평현소재용문사위전답개타량책』처럼 필지마다 주명 등 별도의 인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원당사찰의 직접적인 소유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실제 용주사는 이러한 두 성격을 지닌 위전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결국 당대 사위전의 소유 구조는 '내수사·궁방-왕실 원당-토지 경작자'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형태와 '내수사·궁방-왕실 원당(=토지 소유자)'의 직접 관계되는 형태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 4. 사위전의 경영 실태

그렇다면 조선후기 왕실 원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위전을 경영하였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원 용주사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용주사위답반호사음작인등이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경영 실태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용주사는 1790년(정조 14) 현릉원(顯隆園)의 원당사찰로 창건되었다.<sup>47)</sup> 당시 용주사 창건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다. 해당 비용의 총당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전국 각 사찰에서 시주한 금액 약 13,779냥과 백성들이 시주한 금액 약 52,273냥이 파악된다. 백성들이 시주한 금액은 조정에서 용주사 건립 비용으로 발급한 공명첩 250장의 원납전으로 해석된다. 그밖에 조정 및 궁방에서 제공한 18,461냥과 시전 상인들이 시주한 2,991냥이 확인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87,505냥 정도의 비용을 마련한 것이었다. 해당 수입을 토대로 한 지출 내역은 공사비 약 57,388냥, 화주승(化主僧) 여비 2,000여 냥, 토지 매득비 약 28,116냥으로 파악된다.<sup>48)</sup> 주목되는 점은 용주사 창건을 위해 마련된 전체 금액의 약 32%인 28,116냥이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출 내역은 18세기 후반 이후 창건된 원당사찰인 용주사의 토지가 매득의 방식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7) 『日省錄』 354책, 정조 14년 10월 6일 계축.

48) 정해득, 「正祖의 龍珠寺 創建 研究」 『사학연구』 93, 한국사학회, 2009, 157쪽.

이후 용주사에서 매득한 토지는 궁방전으로 전환되었다. 1798년(정조 22) 용동궁에서 용주사가 매득했던 토지를 면세해줄 것을 내수사를 통해 비변사에 요청하였고, 이듬해인 1799년(정조 23) 이를 운허받았다는 기록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용동궁에서는 용주사 위전으로부터 도조를 수납하였다. 이러한 정황 또한 용동궁에서 용주사 위전의 도조를 연체한 정성보(鄭成甫)라는 인물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서가 전해진다는 것에서 파악할 수 있다.<sup>49)</sup> 따라서 18세기 말 이후 왕실 원당이었던 용주사의 토지는 용동궁에 의해 면세지의 성격を 갖게 된 것이었다.

이후 용주사 위전의 소유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용주사위답반호사음작인등이정책』 수록 지역별 위전

지역	세부 지명	지대	지목	필지수	토지 면적
진위(振威)	야막 (野幕)	도조	전	1	18.3
			답	13	81.3
		도조+세조	전	0	0
			답	13	66.7
	이북 (二北)	도조	전	0	0
			답	4	10.3
		도조+세조	전	18	148.6
			답	24	91.2
	금암 (金巖)	도조	전	0	0
			답	4	21.5
		도조+세조	전	6	65.0
			답	14	62.5
	일서 (一西)	도조	전	0	0
			답	3	11.1
		도조+세조	전	2	22.0
			답	25	74.0

49) 이은진, 앞의 논문, 285~288쪽.

지역	세부 지명	지대	지목	필지수	토지 면적
	일서회화정 (一西檜花亭)	도조	전	61	902.9
			답	91	359.7
		도조+세조	전	0	0
			답	2	14.0
	성남 (城南)	도조	전	0	0
			답	0	0
		도조+세조	전	4	52.0
			답	32	197.1
수원(水原)	장족면 (長足面)	도조	전	0	0
			답	0	0
		도조+세조	전	15	118.5
			답	61	272.5
	용복 (龍伏)	도조	전	1	0.15
			답	1	7.0
		도조+세조	전	0	0
			답	10	55.5
	광고 (光教)	도조	전	0	0
			답	0	0
		도조+세조	전	4	42.0
			답	35	137.8
	삼봉면 (三峯面)	도조	전	0	0
			답	0	0
		도조+세조	전	1	7.0
			답	20	91.1
	합계	도조	전	63	921.35
			답	116	490.9
도조+세조		전	50	455.1	
		답	236	1,062.4	

\* 전거: 『龍珠寺位番班戶舍音作人等厘正冊』(奎18990)

\*\* 토지 면적 단위: 斗落

〈표 1〉은 1832년 당시 용주사가 소유하였던 위전을 지역별로 나누고 지대를 기준으로 도조만 기재된 필지와 도조와 세조가 모두 기재된 필지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도조만 기재된 필지는 용주사가 간접적으로 점유한 위전, 도조와 세조가 모두 기재된 필지는 용주사가 직접적으로 소유한 위전으로 파악되어 그 소유 양상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용주사위답반호사음작인등이정책』에 수록된 전체 465필지의 면적은 146석(石) 9두(斗) 7승(升) 5홉락(合落)으로 전(田) 68석 16두 4승 5홉락과 답(畓) 77석 13두 3승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두락(斗落)으로 환산하면 총 면적은 2,929.75두락이며, 전과 답은 각각 1,376.45두락과 1,553.3두락이다.<sup>50)</sup> 전체 토지 중 전의 비율은 약 47%, 답의 비율은 약 53%로 확인된다. 또한 지역별로는 진위 317필지 2,198.2두락, 수원 148필지 731.55두락으로 소유 위전의 약 75%가 진위에 위치하였다. 그중에서도 일서회화정 지역에 전체 면적의 약 44%인 1,276.6두락이 집중되어 있다.

전체 토지 면적인 2,929.75두락 중 용주사가 간접 점유한 위전은 약 48%인 1,412.25두락, 직접 소유한 위전은 약 52%인 1,517.5두락으로 확인된다.<sup>51)</sup> 간접 점유한 위전은 전 921.35두락, 답 490.9두락으로 각각 65%와 35%의 비중을 차지하며, 직접 소유한 위전은 전 455.1두락, 답 1,062.4두락으로 각각 30%와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간접 점유한 위전은 전의 비중이 높고, 직접 소유한 위전은 답의 비중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밭에 비하여 논외 토지 생산량이 월등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용주사 위전 수입에서 직접 소유한 위전이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용주사가 간접 점유한 위전 1,412.25두락 중 약 89%에 해당하는 1,262.6두락이 진위 일서회화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직접 소유한 위전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50) 『龍珠寺位番班戶舍音作人等厘正冊』(奎18990)의 都已上에는 전체 토지 면적을 전 68석 16두 4승 5홉락과 답 78석 3두 4승락이라고 기술하였지만, 실제 모든 필지의 면적을 합한 결과 전 68석 16두 4승 5홉락, 답 77석 13두 3승락으로 확인된다. 본 전답안의 1석락은 20두락으로 환산하였다.

51) 또한 간접 점유한 위전은 179필지, 직접 소유한 위전은 286필지로 확인된다.

해당 위전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넓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832년 당시 용주사 소유 위전은 직접 소유한 위전의 비중이 높고 그 분포 지역이 넓었다고 할 수 있다.<sup>52)</sup>

한편 용주사의 위전에는 필지마다 작인이 존재하였다. 『용주사위답반호사음작인등이정책』에는 전체 465필지에 정돌(丁墾) 등 총 205명의 작인이 등장한다.<sup>53)</sup> 해당 작인의 신분을 살펴보면 양인 141명과 노비 64명으로 구분된다.<sup>54)</sup> 이러한 작인의 존재는 당시 용주사의 위전 경영이 지주의 위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왕실 원당인 용주사가 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위전의 작인으로부터 지대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832년 용주사가 간접적으로 점유하였던 위전의 도조 수취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832년 용주사 간접 점유 위전과 도조액

지역	세부 지명	지목	토지 면적	도조액	두락당 평균 도조액
진위	야막	전	18.3	15.0	0.82
		답	81.3	325.0	4.00
	이북	전	0	0	0
		답	10.3	35.4	3.44
	금암	전	0	0	0
		답	21.5	96.0	4.47

52) 상대적으로 간접 점유한 위전은 분포 지역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53) 작인을 파악할 때의 기술적 문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첫째, 동음이자의 성명을 지닌 작인들을 동일인으로 취급하였다. 둘째, 이름만 지닌 작인은 동명의 성 보유자와 동일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차용하였다(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164쪽).  
 54) 『용주사위답반호사음작인등이정책』에는 별도의 신분 표기가 없지만 者斤男처럼 姓氏 없이 이름만 표기되어 있을 경우 노비로 구분하였다. 이때 이름만 표기되어 있지만 다른 필지에 동명의 성씨 보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인으로 분류하였다. 앞서 이름만 지닌 작인은 동명의 성 보유자와 동일인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지역	세부 지명	지목	토지 면적	도조액	두락당 평균 도조액
	일서	전	0	0	0
		답	11.1	37.0	3.33
	일서회화정	전	902.9	680.4	0.75
		답	359.7	1,019.7	2.83
수원	용복	전	0.15	0.4	2.67
		답	7.0	21.0	3.00

\* 전거: 『龍珠寺位畚班戶舍音作人等厘正冊』(奎18990)

\*\* 단위: 斗落

당시 용주사가 간접적으로 점유하였던 위전 1,412.25두락의 총 도조액은 2,229.9두 즉, 111석 9두 9승으로 확인된다. 지목별로 전 921.35두락의 도조액은 695.8두, 답 490.9두락의 도조액은 1,534.1두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도조액의 합계를 보면 진위 야막 340두, 이북 35.4두, 금암 96두, 일서 37두, 일서회화정 1,700두 1승, 수원 용복 21.4두로 확인된다. 해당 유형의 도조 수입 약 76%를 일서회화정의 토지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두락당 평균 도조액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받은 약 0.75~2.67두, 논은 약 2.83~4.47두의 분포를 나타낸다. 지목별 평균 도조액은 1두락당 전 0.76두, 답 3.13두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밭의 도지가 낮고 논이 높은 것은 토지 생산량을 고려하여 도지액을 설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용주사가 직접 소유하였던 위전의 도조 및 세조 수취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832년 용주사 직접 소유 위전과 도조액 및 세조액

지역	세부 지명	지목	토지 면적	도조액	두락당 평균 도조액	세조액	두락당 평균 세조액	
진위	야막	전	0	0	0	0	0	
		답	66.7	293.5	4.40	65.52	0.98	
	이북	전	148.6	156.0	1.05	54.84	0.37	
		답	91.2	282.6	3.10	79.92	0.88	
	금암	전	65.0	74.8	1.15	29.70	0.46	
		답	62.5	264.7	4.24	73.40	1.17	
	일서	전	22.0	24.0	1.09	5.70	0.26	
		답	74.0	311.0	4.20	64.30	0.87	
	일서회화정	전	0	0	0	0	0	
		답	14.0	40.7	2.91	12.00	0.86	
	성남	전	52.0	51.4	1.00	24.80	0.48	
		답	197.1	561.8	2.85	183.10	0.93	
	수원	장죽면	전	118.5	143.5	1.21	46.60	0.39
			답	272.5	810.8	2.96	249.00	0.91
용북		전	0	0	0	0	0	
		답	55.5	197.0	3.55	57.10	1.03	
광교		전	42.0	44.0	1.05	12.90	0.31	
		답	137.8	513.3	3.72	132.70	0.96	
삼봉면		전	7.0	7.0	1.00	3.30	0.47	
		답	91.1	335.4	3.68	104.90	1.15	

\* 전거: 『龍珠寺位畚班戶舍音作人等厘正冊』(奎18990)

\*\* 단위: 斗落

1832년 당시 용주사가 직접 소유하였던 위전 1,517.5두락의 총 도조액은 4,111.5두 즉, 205석 11두 5승으로 확인된다. 지역별로 도조액의 합계를 보면 진위 야막 293.5두, 이북 438.6두, 금암 339.5두, 일서 335두, 일서회화정 40.7두, 성남 613.2두, 수원 장죽면 954.3두, 용복 197두, 광교 557.3두, 삼봉면 342.4두로 나타난다. 간접 소유한 위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두락당 평균 도조액의 경우 전반적으로 받은 1.00~1.21두, 논은 2.85~4.40두의 분포를 나타낸다. 지목별 평균 도조액은 1두락당 전 1.10두, 답 3.40두로 파악된다. 이를 앞서 간접 소유 위전의 지목별 평균 도조액과 비교하면 각각 0.34두, 0.27두 정도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용주사는 직접 소유한 위전에서 세조도 함께 거두었다. 전체 1,517.5두락의 총 세조액은 1,199.78두 즉, 59석 19두 7승 8흡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용주사에서는 해당 위전에서 도조와 세조를 합쳐 총 5,311두 2승 8흡을 수취한 것이었다. 이러한 총액의 도조·세조 비율은 각각 약 77%와 23%를 차지한다.

또한 지목별 세조액은 전 455.1두락의 177.84두, 답 1,062.4두락의 1,021.94두로 확인된다. 두락당 평균 세조액 경우 전반적으로 받은 0.26~0.48두, 논은 0.86~1.17두의 분포를 나타내며, 지목별 평균 세조액은 1두락당 전 0.39두, 답 0.96두로 파악된다. 이를 각각 직접 소유 위전의 평균 도조액과 합한다면 전 1.39두, 답 4.36두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간접 점유한 위전에서 평균적으로 전 1두락당 0.76두, 답 1두락당 3.13두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1두락당 징수액이 지목별로 전 0.63두, 답 1.23두가 높은 것이었다. 이는 직접 소유한 위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를 징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지역별 세조액의 합계는 진위 야막 65.52두, 이북 134.76두, 금암 103.1두, 일서 70두, 일서회화정 12두, 성남 207.9두, 수원 장죽면 295.6두, 용복 57.1두, 광교 145.6두, 삼봉면 108.2두로 확인된다. 도조와 동일하게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 장죽면으로 약 25%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이렇듯 1832년 당시 용주사는 간접 점유한 위전에서 도조를 수납하였고, 직접 소유한 위전에서 도조와 세조를 수취하였다.

용주사는 위전에서 거둔 도조를 용동궁으로 상납하였다. 앞서 18세기 말부터 용동궁이 용주사 소유 위전에서 도조를 수납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에서 이러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용주사의 위전 관리 및 도조 상납과 관련된 업무는 용주사 총섭(摠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용동궁에서 용주사 총섭에게 발급한 문서에 따르면 추수기(秋收記)를 추심(推尋)하여 보내고 마름[畝音]으로 적합한 자도 보고할 것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용주사 불향답(佛享畓) 마름의 임명 또는 해임(差汰)을 전적으로 총섭승에게 맡긴다거나 작인의 선정도 본 사찰에서 조처한다는 등의 내용도 확인된다. 마름의 임명 등의 절차는 용주사 총섭이 용동궁에 보고한 뒤 허락을 거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용주사 총섭은 본 사찰의 위전 관리 및 도조 상납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용주사가 용동궁의 도장으로도 기능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sup>55)</sup>

용주사는 도조를 상납하는 대가로 용동궁으로부터 의례 비용을 지급받았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용동궁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6월과 12월마다 용주사에 제향미가(祭享米價) 25냥과 제향비(祭享費) 25냥이 지급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56)</sup> 즉, 매년 100냥씩 용동궁에서 용주사로 의례 실행 비용을 지급해준 것이었다. 따라서 용주사의 도조 상납은 왕실 구성원을 위한 의례를 수행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용주사가 수취하였던 세조의 경우에는 직접 소유하였던 토지의 지대를 작인에게 수납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사찰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용주사는 직접 소유하였던 위전에서 작인에게 세조를 거두어 사찰 제반 운영비로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용주사가 소유 위전의 작인으로부터 지대를 수취하여 토지를 경영하는 이러한 양상은 당시 용주사가 경제적으로 지주의 위상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왕실 원당이었던 용주사는 지주의 입장에서 토지를 경영한 것이었다. 다만 사위전의 소유 구조에 따라 지대 수취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55) 이은진, 앞의 논문, 290~296쪽.

56) 이은진, 위의 논문, 301~303쪽.

이러한 용주사의 위전 경영 양상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19세기 전반 용주사 위전 경영 구조

이처럼 용주사에서는 위전에서 수취한 도조를 용동궁에 상납하였고 용동궁에서는 그 대가로 의례 실행 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직접 소유한 위전의 작인에게는 세조를 함께 거두어 사찰의 운영비를 충당하였다. 이와 같이 용주사는 지주의 입장에서 토지를 경영하였다. 즉, 용주사는 소유 위전을 기반으로 작인에게 지대를 수취하는 지주로서의 위상을 지닌 것이었다. 이러한 용주사의 사례는 당대 왕실 원당이 경제적으로 지주의 위치에서 위전을 경영하였다는 양상을 보여준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 소유와 경영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원당사찰은 내수사 및 궁방을 통해 형성된 사위전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17세기 후반 이후 궁방전 규제가 강화되는 정책적 흐름에 따라 왕실 원당의 사위전 또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8세기 후반까지 이어졌고 당시 사위전의 전체 규모는 약 556결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사위전의 분급이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원당사찰은 왕실 구성원의 축원을 위한 의례를 주관하고 왕실 진상을 담당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대에도 사위전은 분급되었고 이는 왕실 원당의 운영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왕실 원당의 사위전은 단일한 소유 형태를 지닌 것이 아니었다. 현전하는

사위전의 양안에는 필지마다 작명, 주명, 기주, 시작 등의 인명이 기재된 것과 별도의 인명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하였다. 이때 주명 등의 인명이 기재되었다는 것은 ‘내수사·궁방-왕실 원당-토지 경작자’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점유 구조를 지닌 사위전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반면 별도의 인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내수사·궁방-왕실 원당(=토지 소유자)’의 직접적인 소유 형태를 갖는 사위전이라고 추정하였다. 실제 수원 용주사는 이러한 위전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듯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은 소유 구조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형태와 간접적인 형태로 구분되었다.

왕실 원당은 소유한 사위전의 작인으로부터 지대를 수취하여 사찰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다. 1832년 당시 용주사의 위전은 간접적으로 점유한 위전과 직접적으로 소유한 위전으로 구분되었다. 용주사는 간접 점유의 위전에서 도조를 수납하였고 직접 소유의 위전에서 도조와 세조를 수취하였다. 이때 위전에서 거둔 도조는 용동궁으로 상납하였다. 이를 총괄하는 역할은 용주사의 총섭이 담당하였다. 또한 직접 소유하였던 위전에서 수취한 세조는 사찰의 제반 운영비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용주사는 지주의 위치에서 소유 위전을 경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용주사의 사례는 당대 왕실 원당이 경제적으로 지주의 위상을 지녔다는 양상을 보여준다. 결국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은 일정 수준의 분급이 유지되는 가운데 간접·직접 소유가 병존하는 중층적 소유 구조와 지주적 운영 체계 속에서 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조선후기 왕실 원당의 사위전 소유와 경영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대 사찰의 경제적 지위가 흔히 인식되는 것처럼 영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즉, 사찰의 층위에 따라 지주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찰도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 원당사찰의 수입 구조의 일환을 제시함과 동시에 당대 사찰의 역사상이 다층적이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 참고문헌

### 1. 사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가평군현등사위전답개타량성책(加平郡懸燈寺位田畚改打量成冊)』(奎18601)

『경기도여주보은사위전답양안(京畿道驪州報恩寺位田畚量案)』(奎18989)

『내수사급각궁방전답총결여노비총구도안(內需司及各宮房田畚總結與奴婢摠口都案)』(奎9823)

『양근군소재수종사위전답타량성책(楊根郡所在水鍾寺位田畚打量成冊)』  
(奎18421)

『여주목복재수종사위내수사환속전답개타량성책(驪州牧伏在水鍾寺位內需司還屬田畚改打量成冊)』(奎18419)

『여주목수진궁속고달사위전답타량성책(驪州牧壽進宮屬高達寺位田畚打量成冊)』(奎18345)

『용주사위답반호사음작인등이정책(龍珠寺位畚班戶舍音作人等厘正冊)』  
(奎18990)

『지평현소재용문사위전답개타량책(砥平縣所在龍門寺位田畚改打量冊)』  
(奎18578)

### 2. 논저

김갑주,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7.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김석희, 「朝鮮後期 南海縣 《花芳寺量案》 分析」 『한국문화연구』 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8.

김선기,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와 변동 - 해남 대둔사(大菴寺)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200, 한국사연구회, 2023a.

\_\_\_\_\_, 「조선후기 僧役의 제도화와 운영 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b.

\_\_\_\_\_, 「조선후기 간성(杆城) 건봉사(乾鳳寺)의 위상과 존립 양상」 『사학연구』 156, 한국사학회, 2024.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저, 이윤석·다지마 데쓰오[田島哲夫] 역, 『경성제국대학교수가 쓴 조선시대 불교통사』, 민속원, 2020.

박성준, 「18세기 후반~20세기 초 寺位免稅地의 존재양상과 변화」 『역사교육』 130, 역사교육연구회, 2014.

박준성,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 『한국사론』 1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4.

손성필, 「寺刹의 혁거, 철취, 망폐 - 조선 태종·세종대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오해 -」, 『진단학보』 132, 진단학회, 2019.

송수환, 『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 집문당, 2002.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태학사, 2015.

이은진, 「조선후기 龍洞宮의 思悼世子 願堂 관리 - 수원 龍珠寺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57, 한국고문서학회, 2020.

정해득, 「正祖의 龍珠寺 創建 研究」 『사학연구』 93, 한국사학회, 2009.

탁효정, 「조선시대 王室願堂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2.

### 3. 기타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db.snu.ac.kr/main.do>, 검색일: 2025.09.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검색일: 2025.09.30.)

<Abstract>

## Ownership and Management of Sawijeon(寺位田) by Royal Temples in Late Joseon

Kim, Seon-Gi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sawijeon (寺位田, temple service lands) by royal temples (wŏndang) in late Joseon, based on extant documentary sources. Royal temples in this period possessed sawijeon of tax-exempt character, which had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Naesusa and palace estates. However, from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onward, as regulations on palace lands were tightened, the scale of sawijeon attached to royal temples was likewise reduced. Nevertheless, the allocation of sawijeon did not entirely cease.

Royal temples held sawijeon in multiple forms of ownership. Broadly, there were indirectly held lands and directly held lands. In the case of indirect ownership, the structure of possession was “Naesusa/Palace – Royal Temple – Local Landowner,” whereas direct ownership followed the pattern “Naesusa/Palace – Royal Temple (as landowner).” Through these holdings, royal temples secured financial resources for their operation by collecting rents from tenant cultivators.

The royal temples obtained funds for their management by collecting land rents from the tenant farmers of these sawijeon. For example, in 1832 Yongjusa Temple collected *dojo* from indirectly owned sawijeon and both *dojo* and *sejo* from directly owned sawijeon. At that time, the *dojo* was delivered to Yongdonggung, while the *sejo* was used for temple management expenses. This case illustrates how royal temples functioned as landowners and managed sawijeon as an economic basis for their activities in late Joseon. Ultimately, the sawijeon of royal temples in late Joseon can be characterized as operating within a multilayered ownership

structure, in which indirect and direct ownership coexisted, and sustained by a dual system of revenue.

\* Key Words: Royal temple, Sawijeon, Land ownership, Land management, Landlord

· 논문투고일: 2025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12일 · 게재결정일: 2025년 11월 26일
--